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 민홍철・이재강・박용갑

문대림 • 이연희 • 한준호

한정애 • 이건태 • 정준호

백혜런 • 이기헌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은 이용희망자가 많은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그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 자가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,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 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 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,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

하려는 것임(제6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3. 겸용택시(교통약자가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휠 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도입에 관한 사항

제7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겸용택시 도입·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	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		
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		
	<u>야</u>)		
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	②		
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			
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~ 7의2. (생 략)	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7의3. 겸용택시(교통약자가 휠		
	체어에 탄 채로 탑승이 가능		
	하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		
	<u>장착한 택시를 말한다. 이하</u>		
	<u>같다)의 도입에 관한 사항</u>		
8.・9. (생 략)	8.•9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7조의2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	제7조의2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		
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	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	②		
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			
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의2. 겸용택시 도입·확충 지		
	원에 관한 사항	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		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